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시행에 따라 특허청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기술침해·탈취 사건에 대한 수사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특허청에 특허 심사를 위한 인력 7명(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상표 심사를 위한 인력 2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심판지원을 위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특허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7명과 상표·디자인 심사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0호, 2021. 7.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고 있는 특허사업화담당관과 아이디어거래담당관의 존속기간을 2022년 7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부정경쟁조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부정경쟁조사팀을 신설하며,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5명(4급 또는 5급 5명)을 종전의 직급(5급 5명)으로 환원하고,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정보고객지원국 일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을 “산업재산분쟁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산업재산통상협력팀,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수립·시행”을 “수립·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를 “관련 법령·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 중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를 “부정경쟁행위”로,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을 “영업비밀”로, “수립·시행”을 “수립·총괄·조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중전의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중전의 제6호) 및 제8호(중전의 제7호) 중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각각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하고, 같은 항 제7

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한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시행
6.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을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2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중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1호(중전의 제6호) 중 “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을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대응”으로 한다.

2. 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대응 지원
4. 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
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7. 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홍보

8.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5.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제도 운영
6.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7. 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
8.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9.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홍보
10. 그 밖에 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⑥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5.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제도 운영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
7.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9.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홍보
11.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⑨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제도 운영

5. 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7.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판례 및 조사 실무·사례 등 연구
8. 부정경쟁행위 예방·계도를 위한 교육·홍보
9.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제7항(중전의 제6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재산권정보”를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해외 산업재산권”을 “해외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의2 및 제10호 중 “산업재산권”을 각각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한다.

제9조제8항(중전의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자기구팀장”을 “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 제8호(중전의 제10호) 중 “총괄·조정”을 “총괄·조정·시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12호) 중 “제11호”를 “제9호”로 한다.

2.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6.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 및 국제협정·조약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9.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기금 총괄·조정

제10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재산권 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1의2.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

7. 산업재산권 고객센터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제10조제3항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6호, 제16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제15호, 제16호 및 제1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 및 제1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18. 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제10조제5항제12호 중 “외부용 산업재산권”을 “산업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15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6.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제17조제5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

별표 1 중 총계 “1,582”를 “1,601”로 하고, 일반직 계 “1,580”을 “1,59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을 “37”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7”을 “13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79”를 “881”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47”을 “355”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4”를 “65”로 한다.

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4”를 “6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582”를 “1,601”로 하고, 일반직 계 “1,580”을 “1,599”로 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8”을 “39”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를 “17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30”을 “837”으로 하고,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47”을 “355”로 하며,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4”를 “6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을 각각 “150”으로 하고, 서기관·기

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3”을 “5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7”을 각각 “150”으로 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3”을 “54”로 하며,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8”을 “20”으로 한다.

별표 9 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업재산보호협력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1명 (4급 1명)	2024년 3월 31일까지
------------------------------	---------------	----------------

별표 9 나목에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특허 심사업무	7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9) 상표·디자인 심사업무	5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 중 “2021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31일”로, “2021년 8월 1일”을 “2022년 8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부정경쟁조사팀은 2024년 7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부정경쟁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이 분장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생략)	제9조(산업재산보호협력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재산보호협력국에 산업재산보호정책과, <u>산업재산보호</u> 지원과, 산업재산조사과, 국제협력과, 다자기구팀을 두되, 각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u>산업재산분쟁</u> 대응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국제협력과, <u>산업재산통상협력팀</u> , <u>부정경쟁조사팀</u> -----
③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1. 산업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 · 시행	1. ----- 수립 · 총괄 · 조정
2. 산업재산권 보호 제도 및 분쟁조정제도의 운영	3. ----- 관련 법령 · 제도-----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2. -----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시행

4. 부정경쟁행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운영
<신 설>

5.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 · 교육 · 홍보에 관한 사항

6.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 · 분석 및 제도 조사 · 연구

7. 산업재산권 보호 및 부정경쟁행위 방지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의2. 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8. 9. (생략)

----- 부정경쟁행위-----

----- 영업비밀-----

-- 수립 · 총괄 · 조정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령 · 제도-----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 시행계획 수립 · 시행

6.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 홍보

7.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8. 산업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삭 제>

9. 10.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④ <u>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u> 2. <u>산업재산권 분쟁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운영</u> 3. <u>산업재산권 분쟁의 예방 지원</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그 밖에 <u>산업재산권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u> <신 설>	같음) ④ <u>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u> -----. 1. <u>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u> ----- 3. <u>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u> -- 2. <u>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대응 지원</u> 4. <u>영업비밀 보호 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시행</u> 5. <u>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u> 6. <u>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u> 7. <u>해외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교육·홍보</u> 8. <u>산업재산권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u> 9. <u>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u> 10. (현행 제5호와 같음) 11. -----<u>산업재산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대응-----</u> ----- ⑤ <u>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⑤ <u>산업재산조사과장은 다음 사</u>	1. 「<u>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u>」 제6조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u>기술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u> 3. <u>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u> 4. <u>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u> 5. <u>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제도 운영</u> 6. <u>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u> 7. <u>전자적 증거의 수집 및 분석</u> 8. <u>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u> 9. <u>기술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홍보</u> 10. 그 밖에 <u>기술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u> ⑥ <u>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u>
---	--	--	--------------------------------	--

<u>항을 분장한다.</u> 1. 「<u>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u>」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단속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계획의 수립 3.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4. 그 밖에 특별사법경찰권 수행 및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u>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u>」 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u>상표침해범죄</u>”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시행 2. <u>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u> 3. <u>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u> 4. <u>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단·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u> 5. <u>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법령·제도 운영</u> 6. <u>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u> 7.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시정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9. 위조상품 단속 지원사업 운영 및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0. <u>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제도</u>	<u>를 위한 교육·홍보</u> 11. 그 밖에 <u>상표침해범죄 수사</u>에 관한 사항 ⑥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산업재산권</u>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및 추진 2. <u>산업재산권</u>에 관한 외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 총괄 3. <u>삭 제</u> 4. 주요국의 <u>산업재산권정보</u>의 수집 및 관리 5. <u>산업재산권</u> 관련 남북협력에 관한 정책수립 및 추진 6. <u>산업재산권</u> 분야 해외 주재관 및 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7. (생략) 8. <u>해외 산업재산권</u> 민원대응 및 해외고객 지원 9. (생략) 9의2. <u>산업재산권</u>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⑦ ----- -----. 1.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 2.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4. -----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정보</u>---- 5.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6.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 7. (현행과 같음) 8. <u>해외의 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u> ----- 9. (현행과 같음) 9의2.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	--	---	--

10. 그 밖에 <u>산업재산권</u> 관련 외 국과의 양자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0. ----- <u>산업재산권, 부정경 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	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 의 <u>총괄·조정</u>	----- -- <u>총괄·조정·시행</u>
⑦ 다자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u>산업재산통상협력팀장</u> ----- -----.	11. <u>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교육·홍보</u>	<삭 제>
1. <u>산업재산권에 관한 국제기구 와의 협력 총괄</u>	1.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 항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 의 협조	10. ----- <u>제9호</u> ----- ----- -----
2. <u>산업재산권 다자협력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u>	2.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다자협 력 정책의 수립·총괄·조정</u>	<신 설>	⑨ <u>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u>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4. <u>산업재산권</u>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에 관한 사항	4.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2. <u>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3. <u>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단 ·접수 및 통계 분석·관리</u>
6. <u>산업재산권 관련 국제적 동 향 및 제도의 조사·연구</u>	6.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기구 의 동향 및 국제협정·조약 등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u>		4. <u>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 령·제도 운영</u>
7. <u>산업재산권</u>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u>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 진</u>	7. <u>산업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u> ----- -- <u>사항</u>		5. <u>유관기관 간 공동 행정조사 및 기술판단지원에 관한 사항</u>
9. <u>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u>	9. <u>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신탁 기금 총괄·조정</u>		6. <u>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 교육·지원 등 유관기</u>
10. <u>산업재산권에 관한 개발도</u>	8. -----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② (생략) ③ 정보고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u>산업재산권 정보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u> <신설> 2. ~ 6. (생략) 7. <u>산업재산권 관련 민원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u> 8. (생략) 9. <u>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u>	<u>관 협력</u> 7. <u>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제도·판례 및 조사 실무·사례 등 연구</u> 8. <u>부정경쟁행위 예방·계도를 위한 교육·홍보</u> 9. <u>산업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u> 10. <u>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u> 제10조(정보고객지원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u>산업재산권 정보화 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u> 1의2. <u>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법령·제도의 운영</u> 2. ~ 6. (현행과 같음) 7. <u>산업재산권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u> 8. (현행과 같음) <삭제>		10. (생략) 11. <u>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u> 12. <u>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u> 13. ~ 18. (생략) 19. <u>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운영</u> 20. <u>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u> 21.·22. (생략) ④ 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생략) 15. <u>내부용 산업재산권 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6.·16의2. (생략) <신설> <신설> 17. (생략) ⑤ 정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0.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13. ~ 18.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21.·22. (현행과 같음) ④ ----- -----. 1. ~ 14. (현행과 같음) <삭제> 15.·16. (현행 제16호 및 제16호의2와 같음) 17. <u>산업재산권정보 보안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u> 18. <u>산업재산권 관련 개인정보 보호제도에 관한 조사·연구</u> 19. (현행 제17호와 같음) ⑤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외부용 산업재산권</u> 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u>산업재산권</u> ----- ----- --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⑥ 삭제	⑦ (현행과 같음)
⑦ (생략)	⑧ ----- -----.
⑧ 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4. (현행과 같음)
1. ~ 14. (생략)	15. <u>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u>
<u><신설></u>	16. <u>산업재산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u>
<u><신설></u>	17. (현행 제15호와 같음)
15. (생략)	⑨ (현행과 같음)
⑨ (생략)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국제지식재산연수원) ① ~ ④ (생략)	⑤ ----- -----.
⑤ 국제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의2. (현행과 같음)
1. ~ 3의2. (생략)	4. <u>특허청 심사관의 해외훈련 계획 수립 및 추진</u>
<u><신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4. (생략)	산업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산업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산업자원부령 제344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illegible]

신·구정원대비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1,582</u>		<u>1,601</u>		+19
일반직	.		.		.		
계	.		.		.		
			<u>1,580</u>		<u>1,599</u>		+19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		.		.		
	.		<u>36</u>		<u>37</u>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7

134

+7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79

881

+2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 ·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 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 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 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 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47	355	+8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 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 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 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 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 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 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4	65	+1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1,582	· 1,601	+19
·	·	·	
·	·	·	
일반직 계	1,580	1,599	+19
·	·	·	
·	·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8	39	+1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 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 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 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 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 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72	174	+2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	<u>830</u>	<u>837</u>	+7
행정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수의주사·해양수산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	<u>347</u>	<u>355</u>	+8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임업주사보·수의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기상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64</u>	<u>65</u>	+1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7</u>	<u>150</u>	+3
일반직 계	<u>147</u>	<u>150</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3</u>	<u>54</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8</u>	<u>20</u>	+2
·	·	·	
·	·	·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계	<u>147</u>	<u>150</u>	+3
일반직 계	<u>147</u>	<u>150</u>	+3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3</u>	<u>54</u>	+1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기상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8</u>	<u>20</u>	+2
·	·	·	
·	·	·	